

지리산함양전통시장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 이행협약서

2022년 6월 8일



경 상 남 도  
함 양 군

SK 텔레콤(주)  
SK 브로드밴드(주)  
(주)LG유플러스  
드림라인(주)  
(주)서경방송  
세종텔레콤(주)

- 지리산함양전통시장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

# 이 행 협 약 서

본 협약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전기통신 설비의 공동구축) 및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1-161호)에 따라 시행하는 “지리산함양전통시장 그린뉴딜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비 부담 기준과 사업시행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 제1장 총 칙

제1조 (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함양군과 전기통신사업자[SK텔레콤(주), SK브로드밴드(주), (주)LG유플러스, 드림라인(주), (주)서경방송, 세종텔레콤(주)]간의 통신선로의 지중화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권리의무 및 상호협조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공사시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당사자) 본 협약의 당사자는 경상남도 함양군과 전기통신사업자[SK텔레콤(주), SK브로드밴드(주), (주)LG유플러스, 드림라인(주), (주)서경방송, 세종텔레콤(주)]이며, 이하 함양군을 “갑”, SK텔레콤(주), SK브로드밴드(주), (주)LG유플러스, 드림라인(주), (주)서경방송, 세종텔레콤(주)을 “을” 이라 칭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서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지중화 공사는 도로굴착공사, 관로포설공사(인입관로 포함), 케이블 설치공사, 도로복구공사를 말한다.
2. 전항의 인입관로란 지중관로에서 인근 전주의 입상까지의 연결관로를 말한다.
3. 케이블설치 공사는 가공선로에 대한 이설 및 철거공사를 말한다.
4. 도로복구공사란 가복구와 본복구를 말한다.

5. 가복구는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보조기층까지 되메우기 및 다짐공사를 말한다.
6. 본복구는 가복구의 후속공정으로 표층까지의 공사를 말한다.
7. "대표통신업자"라 함은 설계, 시공, 감리, 정산, 하자보수 등 각각의 시행을 주관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하며 SK텔레콤(주)을 대표사업자로 한다.
8. "참여사업자"라 함은 “을” 중 “대표사업자”인 SK텔레콤(주)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구축 SK브로드밴드(주), (주)LG유플러스, 드림라인(주), (주)서경방송, 세종텔레콤(주)을 말한다.

**제4조 (사업구간 및 사업내용)** 본 협약에서 정하는 지중화 사업구간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중화 사업구간은 **보건소에서 연발머리까지**로 하며 동 구간의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데 필요한 주변지역(인접한 지선도로)을 포함한다. 다만, 민원, 문화재, 교통통제 등에 따른 여건변동, 사업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구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면합의(변경될 사업구역 도면포함)로 사업구간을 축소할 수 있다.
2. 사업내용은 가공통신선로를 지중화 하는데 필요한 맨홀설치, 관로설치, 지상기기설치, 지하케이블설치, 통신주 설치 및 철거를 포함한다.
3. 제3조제4호의 도로복구공사의 범위는 지중화 공사를 위하여 “을”이 굴착한 전체구간이다.

## 제2장 공사비 산정 및 정산

**제5조 (공사비의 산정기준 및 범위)** ① “통신선로 지중화공사비”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계법령과 “을”의 규정 및 내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을”이 산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통신선로 지중화공사비의 범위는 지중화에 소요되는 설계, 감리, 측량, 선로의 건설 및 철거 등을 위한 공사비와 도로점용 국유재산 사용료 등 이설부지 확보 비용, 인·허가, 권리설정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제6조 (공사비의 부담주체 및 부담범위)** 지중화 공사비 부담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① “갑”과 “을”은 지중화 공사비 중 도로 본복구비를 제외한 50%씩 각각 부담한다.

② “갑”과 “을”의 부담금중 도로 본복구비를 제외한 관로공사비는 “갑”과 “을”이 각각 지자체 50%, 사업자 50%씩을 대표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도로 본 복구공사는 “갑”이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도로 본 복구공사비 및 본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전액 “갑”이 부담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질변경(도로포장 재질의 변경 등) 및 도로법 시행령이 정한 복구범위 초과에 의한 도로복구 공사비 증가분은 전액 “갑”이 부담하며, 도로포장복구 지자체 시행 등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의사항에 따라 결정한다.

2. “갑”의 요청으로 “을”이 시행하는 통상의 공사방법이 아닌 특수한 공법이나 기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전액 “갑”이 부담한다.

**제7조 (공사비의 납부)** “갑”과 “을”이 제5조, 제6조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는 시기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은 “을”에게 지중화 공사비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2. “갑”과 “을”의 상호 협의 하에 부담금을 분납할 수 있다.

3. “참여사업자”는 “대표사업자”에게 제5조의 지중화 공사비 중 도로 굴착공사비, 관로포설공사비(인입관로 포함), 도로복구공사중 가복구공사비 중 “을”의 부담 비율인 50%를 준공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4. “갑”과 “을”은 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본 조의 규정을 위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공사비의 정산)** 지중화 공사가 준공되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정산업무를 지원한다.

1. “을”은 지중화 공사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 “갑”에게 “을”이 수행한 지중화 공사에 대한 정산서류(전산화된 준공도면 및 “갑”이 정한 보조금 정산서류와 각종 지출서류)를 제출한다.
2. “갑”과 “을”은 정산된 공사비에 따라 분담금 증감액을 정산(환불 또는 추가지급)한다.

### 제3장 공사 시행

**제9조 (공사의 시행범위)** 본 공사의 시행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갑”의 시행범위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약한 도로본복구공사
2. “을”의 시행범위는 케이블설치공사
3. “을”이 “갑”으로부터 위탁받아 시공하는 시행범위는 도로굴착공사, 관로포설공사(인입관로 포함), 도로가복구공사

**제10조 (대표사업자의 의무)** 대표사업자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사업자는 “갑”의 의견을 청취한 후 착공해야 한다.(도로굴착 시기 등)
2. “을”은 도로굴착공사, 관로포설공사(인입관로 포함), 도로가복구공사를 직접 시공한다. 단, 부분적으로 다른 시공사 선정이 필요한 경우(하도급) 사전에 “갑”과 “을”의 사전 서면 승낙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갑”과 “을”의 결정에 따라 지중화공사 관련 보완 또는 추가공사가 필요할 경우 “을”은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단, 보완 또는 추가공사가 “을”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보완 또는 추가 공사비는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설계의 검토)** “갑”과 “을”은 지중화공사 설계에 대하여 설계도면을 상호 교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설계도면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맨홀 설치 위치
2. 제5조에 따른 사업비 산정의 적합성
3. 공사기간 관련
4. 기타 지하매설물 자리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 (공사의 착수시기)** 공사의 착수시기는 각 호와 같다.

1. “을”은 제7조에 따라 “갑”이 약정한 분담금을 지급하고 착수 요청이 있을시 공사에 착수한다.
2. “을”은 통신선로 지중화공사에 대하여 “갑”에게 굴착구간이 포함된 시공일정을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시공 일정대로 실제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 관로포설공사(인입관로 포함)가 완료되면 “을”은 즉시 케이블설치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사의 안전관리)** 본 공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법에서 규정한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4조 (통신선로 지중화공사의 준공)** 지중화공사 준공 후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관로포설공사(인입관로 포함) 준공 후 4개월 이내에 통신 케이블을 포함한 모든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을”의 사유로 기한 초과 시 “갑”은 지중화 공사 완료 전 포장복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추후 시행되는 지중화공사 사업비 및 도로복구 공사비는 전액 “을”이 부담한다.
2. “을”은 제9조제3호에서 정한 시행범위에 대해 공사 완료 시 “갑”에게 공사 완료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갑”은 요청받은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갑”은 지중화공사 완료사항에 대하여 “을”에게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보완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전 항의 보완요구를 받은 “을”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하자 이외의 공사비는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 (준공 후 통신설비 이설)** 본 공사로 인해 지중화 된 통신관련 설비 내지 지상기기 등에 관하여 설치 공사 완료 후 2년 이내에 “갑”이 이설을 요청할 경우에는 “을”은 이설하여야 하며, “갑”은 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부담하며, 새로운 이설장소도 “갑”이 제공한다. 다만, 도로법 등 법률에 의해 “을”이 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민원 처리)** 공사기간 동안 제기되는 민원은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갑”과 “을”이 협력하여 공동 대처하며 “을”은 “갑”이 지중화 공사와 관련된 회의 등에 입회 요청할 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17조 (협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이 본 협약에 따른 공사비를 입금하지 않을 경우
2. 예산 미확보, 지중화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지중화사업이 9개월 이상 연기되거나 협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사업 착수가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제2호의 사유로 “을”이 협약 해제를 요구하더라도 “갑”은 거부할 수 있다.

**제18조 (협약 해제 시 공사비 정산)** 제17조 등 “갑”의 사유로 협약을 해제하는 경우 “을”은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협약 해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한 사업비는 전액 “갑”의 부담으로 한다. 단,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사업구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공사비 정산을 시행한다.

**제19조 (도로점용)**

1. “을”은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도로법에 의거 득하고 도로점용허가 조건을 이행한다.
2. “을”이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갑”은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점용허가가 내려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협약서의 해석)** 본 협약서 해석에 있어 상호간 견해가 다른 경우 또는 본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 (소유권 및 유지관리 등) 본 공사로 인해 지중화 된 통신관련 설비 지상기기 등의 소유권은 공사비 분담 등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있으며, 이에 따라 “을”은 통신설비 등에 대한 유지보수(도로점용료 제외)를 자신의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 (효력발생) 본 협약은 “갑”과 “을”이 서면 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부 칙 -

본 협약의 체결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협약서 7부를 동일하게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서면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6 월 8 일

“갑” 함양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강 승 제 (인)  


“을” SK텔레콤(주)

유 영 상 (인)  


SK브로드밴드(주)

최 진 환 (인)  


㈜LG유플러스

황 현 식 (인)  


드림라인(주)

유 지 창 (인)  


㈜서경방송

윤 철 지 (인)  


세종텔레콤(주)

유 기 윤 (인)  
